

예천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결정

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「예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」에서 심의 의결한 2015년~2018년도 예천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을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= 아 래 =

□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 결정

구 분	합 계	월정수당(연간)	의정활동비(연간)	비고
2015년도	32,055,180원	18,855,180원 (1.7% 인상)	13,200,000원	
2016년도	-	2015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	13,200,000원	
2017년도	-	201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	13,200,000원	
2018년도	-	2017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	13,200,000원	

※ 단, 월정수당 상한액인 19,680,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

※ 의정활동비는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별표 4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

※ 여비는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

붙임 : 1. 위원명단 1부
2. 회의록 1부. 끝.

2014. 10. 10.

예 천 군 수